

#붙임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4. 04



전라남도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지방하천인 마량천은 2011년 하천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약 10년만에 수립되는 하천임.
- 따라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량, 수질, 생태 및 이용 현황 등 제반 사항과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에 맞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1.2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구 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하천구역내 10,000㎡이상 시행예정인 재해예방(하천공사)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협의 절차를 생략함.

<표 1.2 -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구 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사업의 승인 등 전 |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1. 07. 05 :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최초수립
- 2023. 07. 10 :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3. 11. 21 ~ 12. 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 02. 1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요청
- 2024. 02. 22~ 0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 2024. 03. 08: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4. 07.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요청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계 획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

다. 계 획 연 장 : 3.65km

라. 계획시행자 : 전라남도

마. 계획승인기관 : 전라남도

바. 계 획 내 용

1) 계획하천 구간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표 1.4 - 1>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 하천명 | 하천 코드 | 하천지정 근거 | 기본계획 고시년도 | 등급 | 계 획 명 | 시행자 |
|-----|---------|---------------------|------------|----|--|------|
| 마량천 | 4121130 | 전남453호 (2003.12.27) | 2011.07.05 | 지방 | 마량천·당암천 하천기본계획 마량천 L=4.37km, 당암천 L=4.80km | 전라남도 |

나) 계획하천 구간 검토

- 현장조사 및 현황, 종·횡단 측량 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유로 및 시·중점의 변화는 없으나, 기수립의 연장이 과다 결정됨에 따라 금회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하천연장을 재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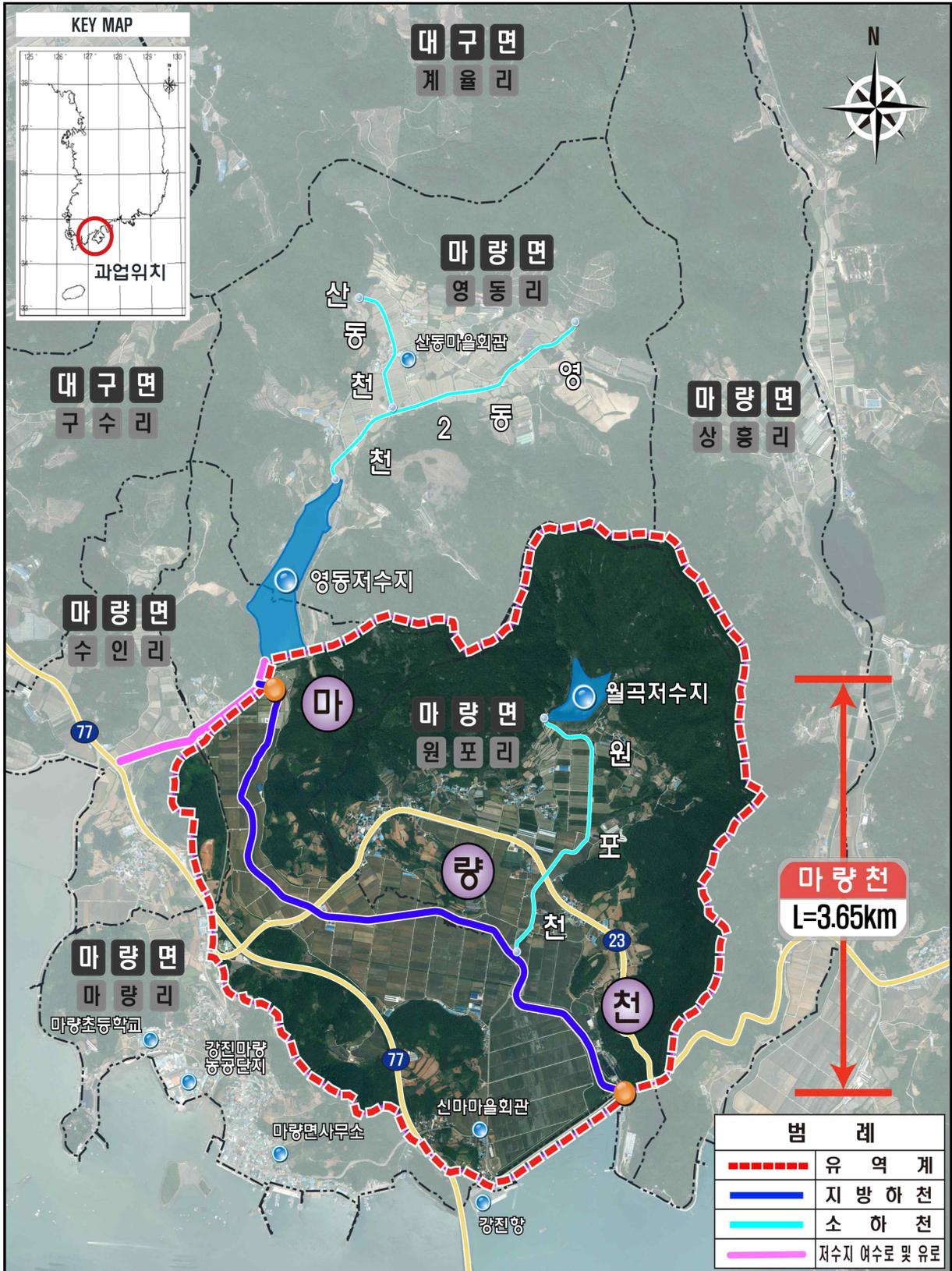
<표 1.4 - 2> 하천구간 범위

| 하천명 | 등급 | 하천의 구간 | | 유역 면적 (km ²) | 유로 연장 (km) | 하천 연장 (km) | 비고 |
|-----|--------|-----------------------|------------------|--------------------------------|------------------|------------------|-------|
| | | 기 점 | 종 점 | | | | |
| 마랑천 | 기고시 지방 | 전남 강진군 마랑면 마랑리 280번지선 | 전남 강진군 마랑면 신마방조제 | 6.76 | 4.57 | 3.67 | 2011년 |
| | 금회 지방 | 전남 강진군 마랑면 마랑리 280번지선 | 전남 강진군 마랑면 신마방조제 | 6.76 | 3.65 | 3.65 | - |

주) 하천기본계획 고시 상 기점은 상류부터 시작하나 금회 계획상 표기되는 NO.는 하류부터 시작함



(그림 1.4 - 1) 위치도



(그림 1.4 - 2) 유역현황도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 본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공고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실시함.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2.2.1 공고·공람

- 신문공고 : 광주일보, 동아일보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2.2.2 주요 공고·공람 내용

- 공람기간 : 2024. 2. 22 ~ 2024. 4. 4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개시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 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2.2.3 주민설명회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10:30
- 장소 : 마량면사무소
- 참석인원 : 전라남도청, 관련용역사, 마을주민
- 개최결과 : 주민설명회 질의내용에 대한 반영계획은 수록 (공청회 개최요청 없음)

전라남도 공고 제2024-206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 하천명 | 위 치 | 연 장 (km) | 주 민 설 명 회 | | | |
|-----|-----|-------------------|-----------|----------------|-------|------------|
| | | | 날 짜 | 시 간 | 장 소 | |
| 1 | 망월천 |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 15.20 | 2024.03.15.(금) | 10:00 |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
| 2 | 계곡천 | 해남군 계곡면 | 10.19 | 2024.03.15.(금) | 14:00 | 계곡면사무소 |
| 3 | 춘전천 | 강진군 강진읍 | 2.07 | 2024.03.13.(수) | 10:30 | 보전마을회관 |
| 4 | 쌍암천 | 순천시 송주읍 | 8.81 | 2024.03.13.(수) | 15:00 | 송주읍 행정복지센터 |
| 5 | 대산천 | 영광군 영광읍, 법성면 | 2.71 | 2024.03.14.(목) | 11:00 | 와룡1리 경로당 |
| 6 | 묘량천 | 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 | 8.56 | 2024.03.14.(목) | 14:00 | 묘량면사무소 |
| 7 | 마량천 | 강진군 마량면 | 3.65 | 2024.03.08.(금) | 10:30 | 마량면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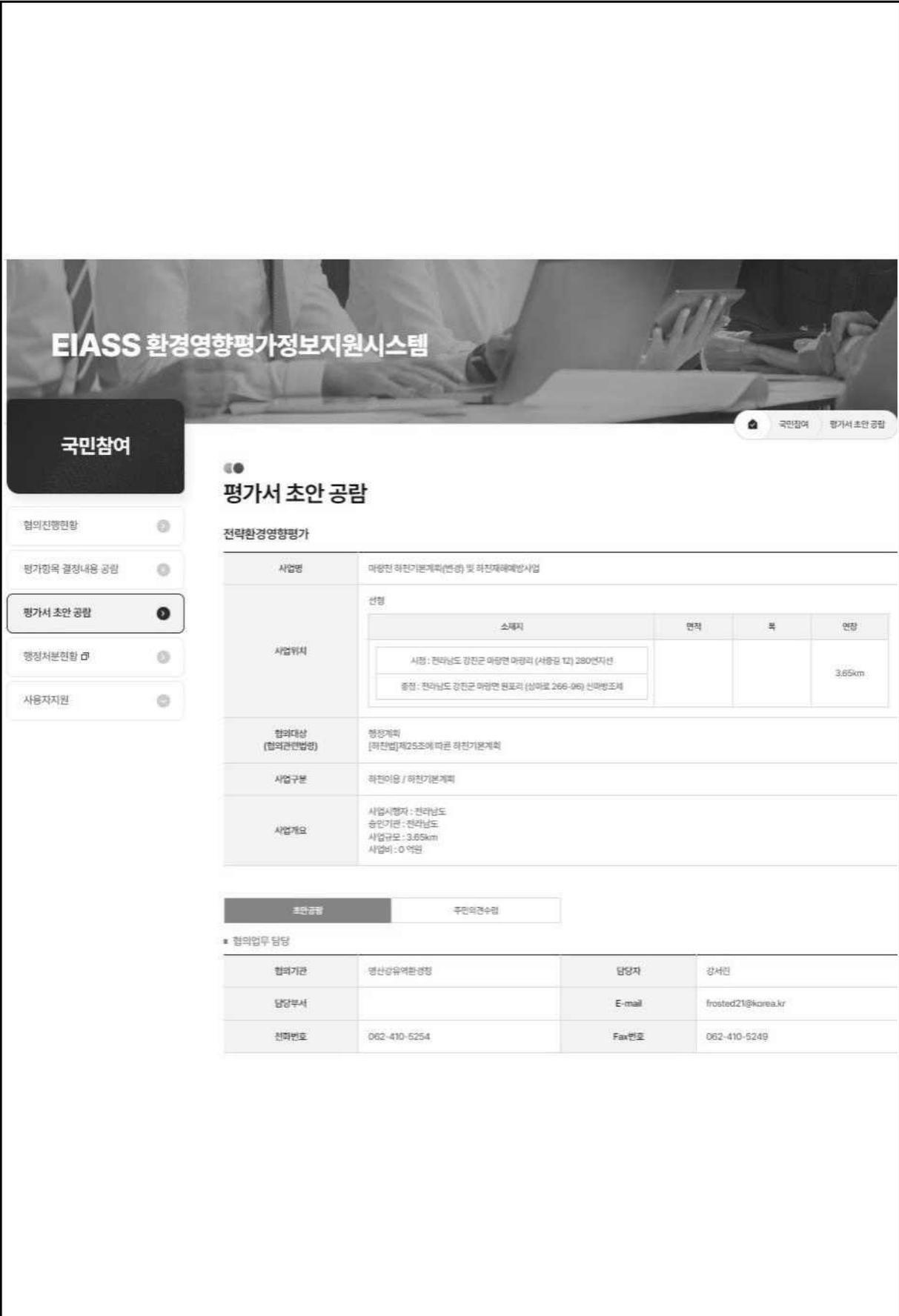
2. 공람기간 및 장소

| 구 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
| 공 램 기 간 | 2024. 2. 22. ~ 2024. 4. 4.(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 공 램 장 소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
| 정 보 통 신 망 |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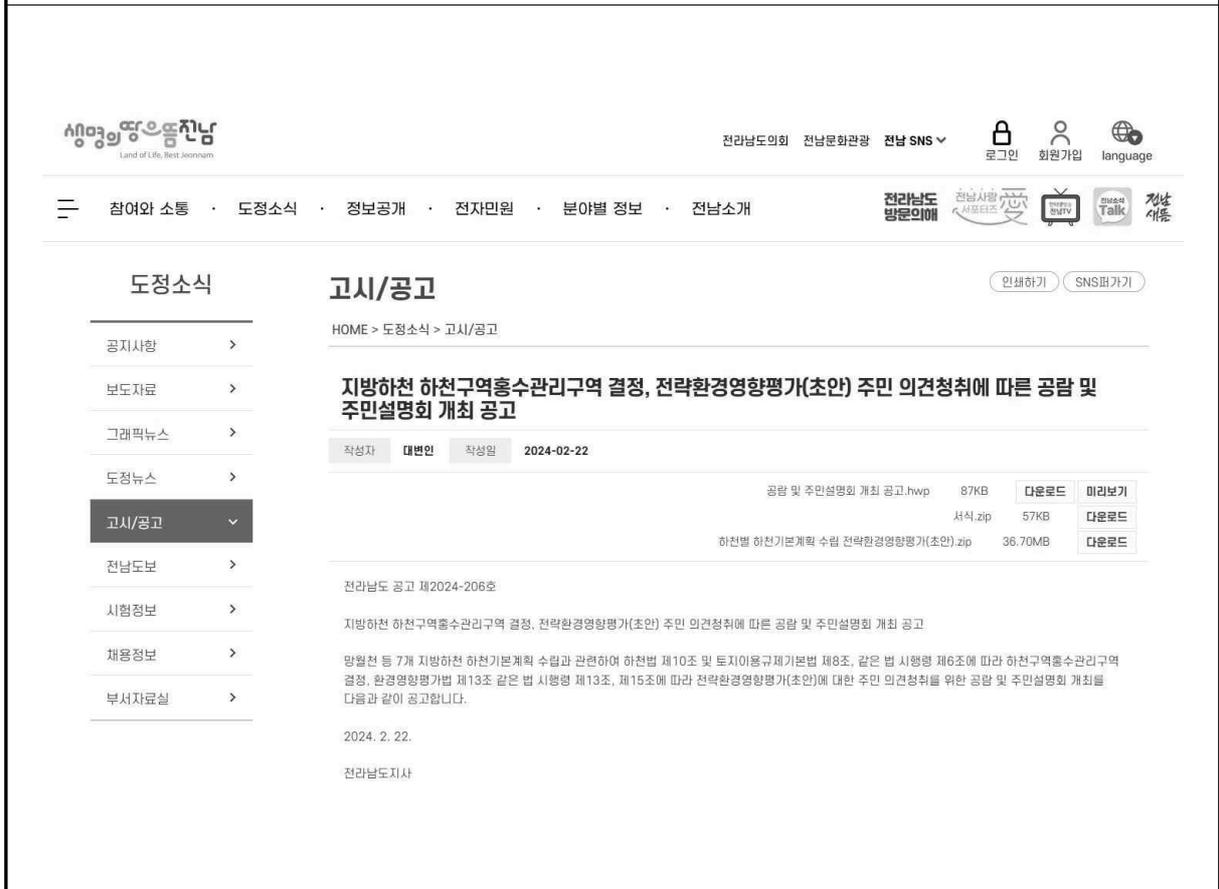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2 - 1) 공람·공고 정보통신망 게재(EIASS 홈페이지)



(그림 2.2 - 2) 공람·공고 정보통신망 게재(EIASS 홈페이지)



(그림 2.2 - 3) 공람·공고 정보통신망 게재(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p>2024년 2월 22일 목요일 광주일보</p> | <p>2024년 02월 22일 A10면</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전라남도 공고 제2024-206호</p> <p>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p> <p>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2. 22. 전라남도지사</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하천명</th> <th rowspan="2">위치</th> <th rowspan="2">연장 (km)</th> <th colspan="3">주민설명회</th> </tr> <tr> <th>날짜</th> <th>시간</th> <th>장소</th> </tr> </thead> <tbody> <tr> <td>1 망월천</td> <td>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td> <td>15.20</td> <td>2024.03.15.(금)</td> <td>10:00</td> <td>학산면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2 계곡천</td> <td>해남군 계곡면</td> <td>10.19</td> <td>2024.03.15.(금)</td> <td>14:00</td> <td>계곡면사무소</td> </tr> <tr> <td>3 춘천천</td> <td>강진군 강진읍</td> <td>2.07</td> <td>2024.03.13.(수)</td> <td>10:30</td> <td>보전마을회관</td> </tr> <tr> <td>4 쌍암천</td> <td>순천시 송주읍</td> <td>8.81</td> <td>2024.03.13.(수)</td> <td>15:00</td> <td>송주읍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5 대산천</td> <td>영광군 영광읍, 법성면</td> <td>2.71</td> <td>2024.03.14.(목)</td> <td>11:00</td> <td>외룡1리 경로당</td> </tr> <tr> <td>6 묘량천</td> <td>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td> <td>8.56</td> <td>2024.03.14.(목)</td> <td>14:00</td> <td>묘량면사무소</td> </tr> <tr> <td>7 마량천</td> <td>강진군 마량면</td> <td>3.65</td> <td>2024.03.08.(금)</td> <td>10:30</td> <td>마량면사무소</td> </tr> </tbody> </table> <p>2. 공람기간 및 장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공람기간 및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공람기간</td> <td>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td> </tr> <tr> <td>공람장소</td> <td>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td> </tr> <tr> <td>정보통신망</td> <td>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td> </tr> </tbody> </table> <p>3. 주민의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명 | 위치 | 연장 (km) | 주민설명회 | | | 날짜 | 시간 | 장소 | 1 망월천 |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 15.20 | 2024.03.15.(금) | 10:00 |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 2 계곡천 | 해남군 계곡면 | 10.19 | 2024.03.15.(금) | 14:00 | 계곡면사무소 | 3 춘천천 | 강진군 강진읍 | 2.07 | 2024.03.13.(수) | 10:30 | 보전마을회관 | 4 쌍암천 | 순천시 송주읍 | 8.81 | 2024.03.13.(수) | 15:00 | 송주읍 행정복지센터 | 5 대산천 | 영광군 영광읍, 법성면 | 2.71 | 2024.03.14.(목) | 11:00 | 외룡1리 경로당 | 6 묘량천 | 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 | 8.56 | 2024.03.14.(목) | 14:00 | 묘량면사무소 | 7 마량천 | 강진군 마량면 | 3.65 | 2024.03.08.(금) | 10:30 | 마량면사무소 | 구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공람장소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 정보통신망 |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 | <p>전라남도 공고 제2024-206호</p> <p>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p> <p>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2. 22. 전라남도지사</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하천명</th> <th rowspan="2">위치</th> <th rowspan="2">연장 (km)</th> <th colspan="3">주민설명회</th> </tr> <tr> <th>날짜</th> <th>시간</th> <th>장소</th> </tr> </thead> <tbody> <tr> <td>1 망월천</td> <td>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td> <td>15.20</td> <td>2024.03.15.(금)</td> <td>10:00</td> <td>학산면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2 계곡천</td> <td>해남군 계곡면</td> <td>10.19</td> <td>2024.03.15.(금)</td> <td>14:00</td> <td>계곡면사무소</td> </tr> <tr> <td>3 춘천천</td> <td>강진군 강진읍</td> <td>2.07</td> <td>2024.03.13.(수)</td> <td>10:30</td> <td>보전마을회관</td> </tr> <tr> <td>4 쌍암천</td> <td>순천시 송주읍</td> <td>8.81</td> <td>2024.03.13.(수)</td> <td>15:00</td> <td>송주읍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5 대산천</td> <td>영광군 영광읍, 법성면</td> <td>2.71</td> <td>2024.03.14.(목)</td> <td>11:00</td> <td>외룡1리 경로당</td> </tr> <tr> <td>6 묘량천</td> <td>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td> <td>8.56</td> <td>2024.03.14.(목)</td> <td>14:00</td> <td>묘량면사무소</td> </tr> <tr> <td>7 마량천</td> <td>강진군 마량면</td> <td>3.65</td> <td>2024.03.08.(금)</td> <td>10:30</td> <td>마량면사무소</td> </tr> </tbody> </table> <p>2. 공람기간 및 장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공람기간 및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공람기간</td> <td>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td> </tr> <tr> <td>공람장소</td> <td>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td> </tr> <tr> <td>정보통신망</td> <td>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td> </tr> </tbody> </table> <p>3. 주민의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명 | 위치 | 연장 (km) | 주민설명회 | | | 날짜 | 시간 | 장소 | 1 망월천 |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 15.20 | 2024.03.15.(금) | 10:00 |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 2 계곡천 | 해남군 계곡면 | 10.19 | 2024.03.15.(금) | 14:00 | 계곡면사무소 | 3 춘천천 | 강진군 강진읍 | 2.07 | 2024.03.13.(수) | 10:30 | 보전마을회관 | 4 쌍암천 | 순천시 송주읍 | 8.81 | 2024.03.13.(수) | 15:00 | 송주읍 행정복지센터 | 5 대산천 | 영광군 영광읍, 법성면 | 2.71 | 2024.03.14.(목) | 11:00 | 외룡1리 경로당 | 6 묘량천 | 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 | 8.56 | 2024.03.14.(목) | 14:00 | 묘량면사무소 | 7 마량천 | 강진군 마량면 | 3.65 | 2024.03.08.(금) | 10:30 | 마량면사무소 | 구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공람장소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 정보통신망 |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 |
| 하천명 | | | | 위치 | 연장 (km) | 주민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시간 |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망월천 |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 15.20 | 2024.03.15.(금) | 10:00 |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곡천 | 해남군 계곡면 | 10.19 | 2024.03.15.(금) | 14:00 | 계곡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춘천천 | 강진군 강진읍 | 2.07 | 2024.03.13.(수) | 10:30 | 보전마을회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쌍암천 | 순천시 송주읍 | 8.81 | 2024.03.13.(수) | 15:00 | 송주읍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대산천 | 영광군 영광읍, 법성면 | 2.71 | 2024.03.14.(목) | 11:00 | 외룡1리 경로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묘량천 | 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 | 8.56 | 2024.03.14.(목) | 14:00 | 묘량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마량천 | 강진군 마량면 | 3.65 | 2024.03.08.(금) | 10:30 | 마량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기간 | 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장소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천명 | 위치 | 연장 (km) | 주민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시간 |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망월천 |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 15.20 | 2024.03.15.(금) | 10:00 |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곡천 | 해남군 계곡면 | 10.19 | 2024.03.15.(금) | 14:00 | 계곡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춘천천 | 강진군 강진읍 | 2.07 | 2024.03.13.(수) | 10:30 | 보전마을회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쌍암천 | 순천시 송주읍 | 8.81 | 2024.03.13.(수) | 15:00 | 송주읍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대산천 | 영광군 영광읍, 법성면 | 2.71 | 2024.03.14.(목) | 11:00 | 외룡1리 경로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묘량천 | 영광군 묘량면, 영광읍, 대마면 | 8.56 | 2024.03.14.(목) | 14:00 | 묘량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마량천 | 강진군 마량면 | 3.65 | 2024.03.08.(금) | 10:30 | 마량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기간 | 2024. 2. 22. ~ 2024. 4. 4.(30일)(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람장소 |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ass.g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광주일보(2024. 02. 22.)</p> | <p>동아일보(2024. 02. 22.)</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2.2 - 4) 공람·공고 신문공고



(그림 2.2 - 5) 주민설명회 사진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2.3.1 관계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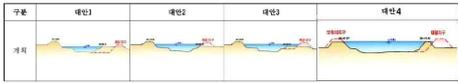
|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영산강유역환경청</p>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보낸[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p> <p>1. 전라남도 자연재난과-3777(2024. 2. 16.)호와 관련됩니다.</p> <p>2. 귀 기관에서 검토 요청한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려니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아울러,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동 사업의 협의 진행 현황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검토의견 1부. 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수신자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r> <td>주무관 김서민</td> <td>주무관 안백현</td> <td>과장 박윤구</td> <td>국장 김현 2024. 3. 28 화요일</td> </tr> <tr> <td>시행 환경평가과-1854</td> <td>(2024. 3. 28.)</td> <td>협수 자연재난과-7537</td> <td>(2024. 3. 28.)</td> </tr> <tr> <td>우 59165</td> <td>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td> <td colspan="2">/ http://yeongsan.go.kr</td> </tr> <tr> <td>전화번호 062-410-5264</td> <td>팩스번호 061-690-1629</td> <td colspan="2">/ frosted21@ye.go.kr / 비공개</td> </tr> </table> </div> | 주무관 김서민 | 주무관 안백현 | 과장 박윤구 | 국장 김현 2024. 3. 28 화요일 | 시행 환경평가과-1854 | (2024. 3. 28.) | 협수 자연재난과-7537 | (2024. 3. 28.) | 우 59165 | 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 / http://yeongsan.go.kr | | 전화번호 062-410-5264 | 팩스번호 061-690-1629 | / frosted21@ye.go.kr / 비공개 | | <p>[붙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p> <p>○ 계획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head> <tr> <th rowspan="2">하천명</th> <th rowspan="2">계획규모</th> <th rowspan="2">계획년도</th> <th colspan="2">위 치</th> <th rowspan="2">주요 계획내용</th> </tr> <tr> <th>시점</th> <th>종점</th> </tr> </thead> <tbody> <tr> <td>마량천</td> <td>3.65km</td> <td>80년</td> <td>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td> <td>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td> <td> - 계획홍수량: 55~250m³/s - 계획하폭: 10~104m - 축제 4,149m, 보축 2,083m - 교량: 제가설 10개소, 준지 3개소 - 보닉자공: 신설 1개소, 제가설 1개소 - 배수시설물: 제가설 23개소, 준지 9개소 </td> </tr> </tbody> </table> <p>○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2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p> <p>○ 계획수립자 / 승인기관 :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p> <p>I.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건은 강진군 마량면 일원의 마량천에 대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분석 시 지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 ○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충실히 반영·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총괄표(시·시설물계획 별 합계를 포함) 작성 | 하천명 | 계획규모 | 계획년도 | 위 치 | | 주요 계획내용 | 시점 | 종점 | 마량천 | 3.65km | 80년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 | - 계획홍수량: 55~250m ³ /s - 계획하폭: 10~104m - 축제 4,149m, 보축 2,083m - 교량: 제가설 10개소, 준지 3개소 - 보닉자공: 신설 1개소, 제가설 1개소 - 배수시설물: 제가설 23개소, 준지 9개소 |
|--|--|----------------------------|-----------------------|-----------------------|---|----------------|---------------|----------------|---------|-----------------------|-------------------------|--|-------------------|-------------------|----------------------------|--|---|-----|------|------|-----|--|---------|----|----|-----|--------|-----|-----------------------|------------------|---|
| 주무관 김서민 | 주무관 안백현 | 과장 박윤구 | 국장 김현 2024. 3. 28 화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환경평가과-1854 | (2024. 3. 28.) | 협수 자연재난과-7537 | (2024. 3.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59165 | 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 / http://yeongsan.g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062-410-5264 | 팩스번호 061-690-1629 | / frosted21@ye.go.kr /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천명 | 계획규모 | 계획년도 | 위 치 | | 주요 계획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점 | 종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량천 | 3.65km | 80년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 | - 계획홍수량: 55~250m ³ /s - 계획하폭: 10~104m - 축제 4,149m, 보축 2,083m - 교량: 제가설 10개소, 준지 3개소 - 보닉자공: 신설 1개소, 제가설 1개소 - 배수시설물: 제가설 23개소, 준지 9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영산강유역환경청(1/9)</p> <p>II. 항목별 검토의견</p> <p>가. 계획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해·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급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급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 ○ 일괄적·획일적 설계기준(홍수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하천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개수율,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제시 ○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교량, 보·낙차공)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 존치 또는 제가설·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제시 | <p>영산강유역환경청(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계획 수립 시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 -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 검토하고, 여도는 해당 하천 내에 서식하는 어류와 수생생물 종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여 시설물로 인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낙차공(전면 월류형 자연형 여울, 쇄(溜)형상), 생태적기법 어드어울림, 자연형 등) 등 <p>나. 입지의 타당성</p> <p>1) 자연환경의 보전</p> <p><input type="checkbox"/>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수면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하천 내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분석 ○ 문헌·현지조사 결과,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생, 수달 등)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 삾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500m 단위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영산강유역환경청(3/9)</p> | <p>영산강유역환경청(4/9)</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2.3 - 1) 관계기관 의견(1)

| | |
|--|--|
| <p>○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 -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시 필요한 경우,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p>○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원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 하천 내 여울, 흐름, 편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p>○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 쌓기 등)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 | <p>□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제시 <p>□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측정 결과, 하류수계 영향 여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계획하천은 해양으로 유입되고 마량상수원보호구역과 마량천 하구습지가 위치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 조사하여 제시 - 오탐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예측·제시하여 적정성 확보 - 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제시 - 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습지의 현황사진,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 ○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

영산강유역환경청(5/9)

영산강유역환경청(6/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 상태가 양호하고 현하폭과 계획하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구간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기존 하천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보축하거나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 준설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계획의 필요성 및 홍수저감효과 제시 • 하상 준설 실시와 미설시 대안 비교 <p>○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나쁨' 단계 이하인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 '15.11.16)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저질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오염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 수립 - 오염된 토양이 해양에 유입될 경우 해양 수질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의 해양 유입을 최소화하는 저감 대책을 수립 <p>2) 생활환경의 안전성</p> <p>□ 환경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바, 예측결과와 정온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 | <p>□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계획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2015. 12. 9.) 등 참조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 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

영산강유역환경청(7/9)

영산강유역환경청(8/9)

(그림 2.3 - 2) 관계기관 의견(2)

| | |
|--|---|
| <p>III.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장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라 기안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 |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계로 뚫어주는 대도인 전남광역시</p> <p>전라남도</p>  </div> <p>수신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유)</p> <p>제목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회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자연재난과-3777(2024. 2. 16.)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도에서 추진중인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p><input type="checkbox"/>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개요</p> <p>가. 사업명: 김진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사업 나. 위치: 전라남도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 다. 면적: 3.65km 라. 수립기관: 전라남도 마. 승인기관: 전라남도</p> <p>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 산림 국 장 서명생략</p> </div> <hr/> <p>주무관 최대일 환경정책팀장 김용원 환경정책과장 진광 2024. 3. 5. 발주자 김초자</p> <p>시행 환경정책과-5192 (2024. 3. 5.) 접수 자연재난과-5321 (2024. 3. 5.) 우 6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안로 16 / 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7022 팩스번호 061-286-4715 / cd624@korea.kr / 비공개(5)</p> |
| <p style="text-align: center;">영산강유역환경청(9/9)</p> |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청(1/4)</p> |
| <p style="text-align: center;">강진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p>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 ○ 규 모 : 3.65km ○ 시행기관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전라남도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와 관련된 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의견임. ○ 본 평가서는 하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획 및 남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보,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론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대기질과 소음·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10개소)에 대한 소음·진동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방음관설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청(2/4)</p> |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청(3/4)</p> |

(그림 2.3 - 3) 관계기관 의견(3)

| | |
|---|---|
| <p>○ 동 평가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가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p> <p>○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p> <p>○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p> |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52회 강진항지축제, 2024. 2.23.(금)-3.3.(일) 대구권 고려항차오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p> <p>강진군</p> </div> <p>수신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유) 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서 제출</p> <p>전라남도 자연재난과-3777(2024. 2. 16.)호와 관련하여 마량천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검토 의견서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강진군</p> </div> <p>주무관 박현마 과장 진광 2024. 3. 14. 양민숙 발신자</p> <p>시행 환경과-11773 (2024. 3. 14.) 접수 자연재난과-6180 (2024. 3. 14.) 우 5925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www.gangjin.go.kr 전화번호 061-430-3224 팩스번호 061-430-3229 / yos12@korea.kr / 비공개 개인정보보호 즉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p> |
| <p>전라남도청(4/4)</p> | <p>강진군청(1/2)</p> |

|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마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p> </div>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이·저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해야 함. ○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에서 관련된 법정보호종 식,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야 함.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정적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문 의견서</p> </div> <p><input type="checkbox"/> 자문안건 :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p> <p><input type="checkbox"/> 자문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하천명</th> <th>자 문 의 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량천</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강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ex, Page-149, 마지막문단) 5. [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6. 본 보고서에 활용한 "마량천 하천기본계획"에 수록된 계획년도, 확률관우량,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자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4. 03. 05.</p> <p style="text-align: right;">자문위원 : 한 희 찬 </p> | 하천명 | 자 문 의 건 | 마량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강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ex, Page-149, 마지막문단) 5. [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6. 본 보고서에 활용한 "마량천 하천기본계획"에 수록된 계획년도, 확률관우량,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 |
|---|--|-----|---------|-----|---|
| 하천명 | 자 문 의 건 | | | | |
| 마량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강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ex, Page-149, 마지막문단) 5. [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6. 본 보고서에 활용한 "마량천 하천기본계획"에 수록된 계획년도, 확률관우량,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 | | | | |
| <p>강진군청(2/2)</p> | <p>조선대학교</p> | | | | |

(그림 2.3 - 4) 관계기관 의견(4)

2.3.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표 2.3 - 1>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총괄 | ○ 동 건은 강진군 마량면 일원의 마량천에 대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
| | ○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 수립하겠으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 |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하겠음. | |
| | ○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충실히 반영·작성하여야 함 |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작성하겠음. | |
| | -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총괄표로(시설물계획 별 합계를 포함) 작성 | ○현재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시 변경 내용을 총괄표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
| II.항목별 검토의견 | 가. 계획의 적정성 | | |
| | ○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해·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상위계획 및 기수립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토대로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으며, 금회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 ○현재 기존 취수보 철거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회 기본계획에서 철거로 계획하였음. ○별도의 하천정비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건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급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결과, 풍수해 및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내용을 제시하겠음. ○하천재해 해소를 위해 축제 등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수재해방지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배수펌프장 증설 계획 협의 중에 있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획일적 설계기준(홍수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하천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량 산정(기초조사, 기본·계획홍수량) 및 개수계획(계획홍수위, 시설물계획 등) 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라남도 자문회의(1차, 2차)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개수율,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치수경제성을 실시하여 빈도별 홍수범람도 등을 작성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유고 부족구간에 확폭계획을 지양하였으며 현하폭 유지 등을 위하여 더돈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교량, 보·낙차공)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 존치 또는 재가설·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철거되어 있는 취수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제2수문의 경우 수위저감 및 용수 취수 등을 위하여 철거 후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기존 교량 등은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전부 재가설 및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재가설에 대한 능력검토 내용을 토대로 재가설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검토상 만족하는 구조물은 존치하였으며, 능력검토 부족 구조물에 대해서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하지만 최상류에 있는 수로교의 경우 능력검토는 만족하지 못하나, 용수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존치토록 계획하였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건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 철거 계획 수립 시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 | ○제2수문은 현재 취수 목적으로 사용중에 있어, 홍수위 저감을 위하여 수문은 철거하고 취수를 위한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홍수위 산정시 반영하여 계획하였음. | |
| | -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 검토하고, 어도는 해당 하천 내에 서식하는 어류와 수생생물 종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여 시설물로 인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여야 함 | ○낙차공 재가설시 자연형 여울로 제시하였으며, 가동보 신설시 어도 설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
| | * 보/낙차공(전면 월류형 자연형 여울, 소(꺾)형성), 생태적기법 어도(여울형, 자연형 등) 등 | ○낙차공 재가설시 자연형 여울로 제시하였으며, 가동보 신설시 어도 설치를 제시하였음. | |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겠으며,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 |
| | - 하천 내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 | ○금회 하천의 하류부는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계획홍수위 대비 시설제방고가 현저히 낮아 부득이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류부 여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홍수위 부족구간에 대하여 호안 설치, 제방고 증고 높이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축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축제와 보축에 대한 비교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 | |
| | *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분석 | ○금회 하천의 하류부는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계획홍수위 대비 시설제방고가 현저히 낮아 부득이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류부 여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홍수위 부족구간에 대하여 호안 설치, 제방고 증고 높이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축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축제와 보축에 대한 비교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문헌·현지조사 결과,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삿, 수달 등)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 삿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500m 단위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 | ○공사구간을 300~500m 단위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한 후 검토(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 |
| |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토록 하겠음. | |
| | -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 | ○해양 동·식물상 조사(문헌)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
| | -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한 후 검토(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 |
| | -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계획평면도에 축제, 보축 등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으며,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 -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완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제내지와 제외지의 비탈경사는 1:2 경사로 계획하였으며, 수리조건에 맞는 호안타입(식생매트, 호안블럭, 생태호안블럭 등)을 제시하겠음. | |
| | - 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 하천 내 여울, 흐름, 꺾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 ○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 하천 내 여울, 흐름, 꺾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
| | ○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지구별로 구분하여 수리조건에 맞는 호안타입(식생매트, 호안블럭, 생태호안블럭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
| |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 쌓기 등)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 쌓기 등)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 ○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토록 하겠음. | |
| | ※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제시 | | |
| | □ 수환경의 보전 | | |
| | ○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겠음. | |
| | * 수질측정 결과, 하류수계 영향 여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 | |
| | -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음. | |
| | ○ 계획하천은 해양으로 유입되고 마량상수원보호구역과 마량천 하구 습지가 위치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하천 특성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 |
| - 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 조사하여 제시 | ○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겠음. |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 | |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오락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예측·제시하여 적정성 확보 | ○오락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제시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 | | | | | | | | |
| | - 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제시 | ○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 | | | | |
| | - 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 습지의 현황사진,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 | ○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 습지의 현황사진,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 | | | | | | | | | | |
| | ○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금회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교량 설치구간 등 종단계획상 퇴적이 많은 구간(종단 역전구간)은 퇴적구간 상류부의 추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최대한 기존 하천 횡단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 | | | | | | | |
| | - 호안 상태가 양호하고 현하폭과 계획하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구간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기존 하천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보축하거나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금회 여유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현 지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대안1</th> <th>대안2</th> <th>대안3</th> <th>대안4</th> </tr> </thead> <tbody> <tr> <td>계획</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대안1 | 대안2 | 대안3 | 대안4 | 계획 | | | | | |
| 구분 | 대안1 | 대안2 | 대안3 | 대안4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하상 준설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계획의 필요성 및 홍수저감 효과* 제시 | ○금회 하상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 | | | | | | | | |
| * 하상 준설 실시와 미실시 대안 비교 | | | | | | | | | | |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항목별 검토의견 | ○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나쁨' 단계 이하인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저질의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 '15.11.16) 참고 | | |
| | - 하천의 저질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오염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 수립 | ○마량천의 하천저질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오염된 토양이 해양에 유입될 경우 해양 수질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의 해양 유입을 최소화하는 저감 대책을 수립 | ○계획하천 공사시 토사의 해양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
| | 2) 생활환경의 안전성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기준 부합성 | | | |
| |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지 않은바, 예측결과와 정온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 | ○공사 시 하천정비계획 내용을 토대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건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 ○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 |
| | ○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겠으며,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 |
|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2015. 12. 9.) 등 참조 | | |
| |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
| |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 ○ 공간관리계획을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제시하겠음. | |
| |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Ⅲ. 기타사항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의 경우도 적합하게 작성·제시토록 하겠음. | |
| |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겠으며, 최대한 정량화하여 작성·제시하겠음. | |
| | - 문헌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 ○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음. | |
| |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 |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하겠음. | |
| |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겠음. | |
| |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겠으며,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과 관계행정기관(전라남도청, 강진군청) 및 관계전문가(조선대학교 교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Ⅲ. 기타사항 | -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초안검토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 |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토록 하겠음. | |

<표 2.3 - 2>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건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검토의견 | ○ 본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와 관련된 道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의견임.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
| | ○ 본 평가서는 하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 | |
| | ○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
| |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금회 계획이 수립되는 마량천 3.65 km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 | |
| | ○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획 및 남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현지 및 문헌조사시 발견된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획 및 남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
| | ○ 교량, 보,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 철거되어 있는 취수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제2수문의 경우 수위저감 및 용수 취수 등을 위하여 철거 후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기존 교량 등은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전부 재가설 및 존치(수로교는 능력검토 부족하나 용수이용 및 현황을 고려하여 존치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재가설에 대한 능력검토 내용 토대로 재가설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음. | |

<표 계속>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I.검토의견 | ○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 | | | |
| | -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 | |
| |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하겠으며,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 |
| | -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음. | | |
| |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 |
| | - 대기질과 소음·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대기질과 소음·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현실가능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 | |

<표 계속>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검토의견 | - 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 (10개소)에 대한 소음이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이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 |
| | ○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 | | |
| |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
| | ○ 동 평가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
| |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겠음. | |
| | ○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

<표 2.3 - 3> 강진군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검토의견 |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도록 하겠음. | |
| | ○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해야 함. |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하겠음. | |
| | ○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 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삶,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계적 공사 계획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현장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삶,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
| | ○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겠음. | |
| | ○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표 계속> 강진군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검토의견 | ○ 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야 함. | ○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토록 하겠음. | |
| II.기타 | ○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

<표 2.3 - 4> 한희찬(조선대학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I.검토의견 | ○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
| | ○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획하천이 위치한 마량천의 경우 마량상수원보호구역,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및 마량천하구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탈자가 확인됨(ex, Page-149, 마지막문단) | - | |
| | ○ [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홍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 ○기수립 및 금회 홍수량 산정방법 비교 및 홍수량 비교를 제시토록 하겠음. | |
| ○ 본 보고서에 활용할 “마량천 하천기본계획”에 수록된 계획빈도, 확률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 | ○계획빈도, 확률강우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 | | |

<표 2.3 - 5> 주민설명회 질의내용 및 조치계획

| 질의자 | 질의내용 | 답변내용 및 조치계획 | 비고 |
|---------|--|--|----|
| 마랑면 주민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교 하류쪽으로 염수피해를 방지하고 갈수기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 및 교량을 설치해 주었으면 함 ○ 상류에 비하여 하류의 교량 수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염류 피해 방지를 위한 취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간임. ○ 또한, 해당구간은 기존에 보 및 교량이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신규 설치시 홍수위 상승 등 치수 및 환경, 경제성,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 협의(농어촌공사, 강진시 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내 갈대는 제거가 필요함. 갈대로 인해 수위에 영향이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계획으로 인하여 하상의 갈대를 제거할 계획이며, 향후 갈대 식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하겠음. | |
| 마랑면 주민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예상지역에 축사 등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축제 및 보축 등의 계획으로 인하여 제내지 농경지(사유지) 편입은 발생하나,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류부 좌안측에 홍수방어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류 및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창고 등은 금회 저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 |
| 마랑면 주민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수문 등 검토 후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겠음. | |
| 마랑면 주민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잠수교 철거 후 재가설되는 교량의 크기가 큰 트랙터 같은 농기계까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인가? ○ 현재 교량을 지나 회전할 때 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잠수교 철거 후 기존에 맞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량 폭은 '농어촌도로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5m 이상으로 하겠음. ○ 또한, 교량 계획시 가각부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겠음. | |